

## 서울고등법원

### 제 7 행정부

#### 판 결

사 건 2023누52088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 
원고, 항소인 미합중국인 테일러 스티븐 엘  
미국 63303 미주리주 세인트 찰스 워터폴 드라이브 1767  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, 김동환, 이승훈  
피고, 피항소인 특허청장  
소송수행자 안문환, 명대근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 담당변호사 김하영, 임진주  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. 6. 30.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  
변 론 종 결 2024. 4. 18.  
판 결 선 고 2024. 5. 16.

##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9. 28. 원고의 특허출원 제10-2020-7007394호를 무효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### 2. 추가 판단

가. 원고는,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는 해석은 근거가 없고, 특허법 입법 당시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입법적 공백은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특허법 제33조 및 제42조의 해석에 비추어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다. 인공지능의 출현 및 발전 정도,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,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에 비추어 현재의 특허법 규정만으로 인공지능을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. 향후 인공지능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나. 원고는 인공지능이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인공지능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.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'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'고 규정하여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특허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, 관련 권리와 의무는 인공지능의 소유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현행 특허법의 체계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


판사

구회근

기회근 


판사

배상원

배상원 

판사

최다은

최다은 

# 정본입니다.

2024. 5. 16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김명수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고등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